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선진화, 체계화,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재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로 제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 규정 (안 제5조)
-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도세의 한도 규정 (안 제6조)
-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 (안 제7조)

4. 검토의견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 서류의 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고(제1항)
 - 매년 부과고지하는 도세 중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등은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안 제5조에서는
 -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제1항)
 - 도세징수교부금은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시군에 교부토록 함(제2항)
- 안 제6조에서는
 - 고지서 세액이 50만원 이하의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 가능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성실납부자를 연 3건 이상(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 제외),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기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

금번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도세 부과징수의 운영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 임 : 충청북도 도세기본조례안 1부. 끝.